

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규정

제 1조 (목적)

본 규정은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자 선정에 관하여 대한천식 알레르기학회(이하 본 학회)로 위임한 사항의 심의, 결정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지원 대상자의 자격)

국외학술대회 참가 경비 지급 대상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한 본 학회 및 유관학회의 회원들로 한다.

제 3조 (지원범위 등)

참가 경비의 지급 기준과 지원 범위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른다.

제 4조 (신청공지)

참가지원 신청방법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또는 메일로 공지한다.

제 5조 (신청서류)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.

1.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신청서(별지서식)
2. 학술대회의 연자, 좌장, 발표자(포스터 발표자 포함), 토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문건(예; acceptance letter, 조정장, 연자명이 명시된 공식 학술일정 등) 사본 1부
3. 초록 사본 1부

제 6조 (지원 대상자 선정기준)

본 학회 이사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기획이사, 국제이사, 연구이사로 구성된 국외학술대회 지원위원회(위원장 이사장)에서 다음의 항목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, 본 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최종 선정하여 개별 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한다.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.

1. 학술대회 발표 내용의 학술적 가치
2. 신청자의 본 학회 기여도
3. 조정연자, 좌장, 구연 발표자, 신진 연구자를 우선 지원 대상자로 하되, 병원별, 과별 안배와 최근 연간 지원 횟수 등을 고려한다.
4. 본 학회의 국제사업을 위한 정책과 유관학회와의 협력 사항도 고려한다.

제 7조 (피지원자의 의무)

경비지원을 받은 국외학술대회 참가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아래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.

1. 국외학술대회 참가결과 보고서(별지서식)

2. 국외학술대회 참가경비 정산서(별지서식)
3. 각 항목별 영수증 첨부 양식(별지서식)

제 8조 (경비 지급방법)

참가지원 경비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서 정산된 금액이 본 학회로 입금된 이후 피지원자의 은행계좌로 일주일 이내에 송금한다.

제 9조 (보직)

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외학술대회 지원위원회 혹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.

제 10조 (시행)

본 규정은 2011년 9월 16일 부로 시행한다.

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

(2011년 12월 29일 개정)